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실사보고서

1. 실사 결과

1992. 4. 13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문교사회위원회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2년 4월 1일

○ 회부일자 : 1992년 4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 77회 임시회

○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 4. 9)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보사환경국장 정태현)

가. 제안 이유

의료보호법(법률 제4353호, 91.3.8),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461, 91.9.6), 동법시행규칙(보건사회부령 제883호, 91.10.10)이 전면 개정되고,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의료보호 진료비의 본인부담 및 대불 기준(보건사회부고시 91-83호, 91.12.18)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의료보호대불금 분할상환기간 조정 "1년 내지 3년" → "9월 내지 3년".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5조, 조례 제5조 제2항)

○ 대불금 결손처분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던 것을 "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신설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군수가 결정로록 함. (의료보호법 제18조, 조례 제5조 제2항)

- "의료보호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은 전액 도지사에게 반납" 삽입.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 제4항, 조례 제7조 제1항)

- "의료보호기금 운용현황의 분기보고" 조항 신설.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9조, 조례 제7조 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만)

가. 의료보호법(법률제4353호, 91.3.8), 동법시행령(대통령령제13461호, 91.9.6), 동법시행규칙(보건사회부령 제883호, 91.10.10)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나. 의료보호법 제18조의 개정으로 대불금 결손처분시 도지사 승인사항에서 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신설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하고,

다.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개정으로 100,000원 미만의 대불금 분할상환 기간을 1년에서 9월로 조정하였으며,

라.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의료보호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은 전액 도지사에게 반납" 토록 명시되었고,

마. 동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료보호기금 운용현황을 분기보고" 토록 하여 그에 따라 조례를 보완하려는 것과 현행 조례의 字句등을 합리적으로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 른 요 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7. 소 수 의 건 요 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가. 개정조례안

나. 신.구문 대비표